

의안번호	제 274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5년 10월 30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4
----------	-----

제출연월일 : 2015년 10월 30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계약심의위원회의 행정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및 재위촉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 해촉 규정을 보완 (안 제2조제1항, 제3조, 제5조의2, 제10조)
 - 공무원 위원 1/3 초과금지, 연임 1회에 한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회피사유발생시 미회피 위원과 비밀누설, 정보의 사적이용시에 해촉 사유 신설
- 회계관직 명칭 변경 (안 제2조제2항, 안 제6조제3항)
 - 종전 충청북도경리관 ⇒ 개정 충청북도재무관
- 인용법률 제명 변경 (안 제2조제2항제4호)
 - 종전 건설기술관리법 ⇒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시장·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4조제1항)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 경리관”을 “충청북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연임할”을 “한 차례만 연임할”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 내지 제6호는”을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중 “충청북도경리관”을 “충청북도재무관”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을 “위원장은”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있다”를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①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② 위원장은 <u>충청북도경리관</u>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한다.</p> <p>1. 2. (생략)</p> <p>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u>추천하는 자</u></p> <p>4. 「<u>건설기술관리법</u>」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u>국가기술자격법</u>」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p> <p>5. 6. (생략)</p> <p>③ (생략)</p>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① ----- ----- ----- ----- <u>구성</u> <u>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u></p> <p>② ----- <u>충청북도재무관</u>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 <u>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u></p> <p>4. 「<u>건설기술 진흥법</u>」 ----- ----- ----- -----</p> <p>5. 6.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략)</p> <p>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다.</u>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u>제4호 내지 제6호는</u>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 5. (생략)</p> <p>6. <u>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신설></p> <p>② (생략)</p> <p><신설></p>	<p>제3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한 차례만 연임할 -----.</p> <p>제4조(기능) ① -----</p> <p>-----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u></p> <p>7. <u>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u></p>

현행	개정안
<p>제6조(소위원회) ①·② (생략)</p>	<p>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p>1.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u></p> <p>2. <u>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u></p> <p>② <u>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u></p> <p>③ <u>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u></p> <p>제6조(소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u>충청북도 경리관</u>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장이 선임하되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④ (생략)</p> <p>제10조(위원의 해촉) <u>도지사</u>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때에는</u>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③ ----- <u>충청북도재무관</u> -----</p> <p>-----</p> <p>-----</p> <p>-----</p> <p>-----</p> <p>-----</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위원의 해촉) <u>위원장</u>은 -----</p> <p>----- <u>경우에는</u> -----</p> <p>-----</p> <p><u>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p> <p>5. <u>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u></p>

관련법령 발췌

□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 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